

 		<h1>보도자료</h1> <p>2020. 3. 6.(금) 배포</p>	
보도일	<b>배포 즉시</b>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과장 오신종 (☎ 044-203-6648) 사무관 박지혜 (☎ 044-203-6683)

##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설치 및 운영·관리의 특례 및 기본 원칙 규정 마련
- ◆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사학의 재정 운용 및 폐교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청산절차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안이 3월 6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 학교시설 활용 확대, 생활SOC 확충 관련 학교시설 복합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사항(기본원칙)을 규정하였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책무를 부여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협의 필요사항을 정하며,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을 규정하였다.

- 특히, 학교복합시설이 학교 내에 위치해 있으되 학생·교직원 및 지역주민이 동시에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학생 안전, 교육활동 우선사용, 관리책임 완화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붙임】 참고 2-①

###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 이번 개정으로 폐교대학과 해산한 법인이 보관 중이던 기록물은 교육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이관 받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사립학교법인의 교육경험 이사 자격의 범위를 유·초·중·고 및 대학의 교원과 이에 준하는 경험(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가진 경우로 명확히 하였다.
- 아울러, 현재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기간은 법인마다 정관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3년, 입양휴직 6개월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붙임】 참고 2-②

###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 ]

- 이번 개정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해산법인에 대한 청산지원 업무와 폐교대학 등의 기록물을 이관 받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기금을 통해 해산법인에게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되었다. 【붙임】 참고 2-③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 2009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2014~2015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던 저금리 전환대출을 1년간 재시행하여 고금리로 인한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붙임】 참고 2-④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일(日)단위로 부과하도록 하고, 수도권 개발지역 내 신규 학교용지 무상공급 시 기존 학교용지를 무상 양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 개발사업시행자가 장기 미사용된 학교용지의 용도변경 및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붙임】 참고 2-5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붙임】 참고 2-6

##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및 유아교육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으로 교육부장관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각종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공개하게 되었다.

【붙임】 참고 2-7

##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으로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감이 각 시·도의 조례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붙임】 참고 2-8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력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으로 외국대학의 분교인 외국교육기관이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어 국내에서의 산학협력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국내 산업체·연구소와의 산학연 협력에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학연 협력 분야에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참고 2-9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외국교육기관이 법령을 위반하는 산학연 협력 활동을 하는 경우, 단호히 제재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되었다. 【붙임】 참고 2-10

【참고】 1. 3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2.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법안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6199), 홍기욱 사무관(6529)
사립학교법	사립대학정책과	과장 송선진(6912), 권 진 서기관(6932), 박소하(6931)
	교원정책과	과장 강정자(6688), 정지은 사무관(694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사립대학정책과	과장 송선진(6912), 권 진 서기관(693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김태경(6285), 박재희 사무관(627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6199), 홍기욱 사무관(652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김태환 사무관(6541)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통계과	과장 하유경(6325), 허영기 서기관(6630)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6199), 홍기욱 사무관(652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국제화담당관	과장 안주란(6771), 장영희 사무관(6769)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교육국제화담당관	과장 안주란(6771), 장영희 사무관(676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정책과	과장 송은주(6804), 신나라 사무관(6867)
대한민국학술원법	학술진흥과	과장 윤소영(6604), 조의정 사무관(6653)



## 참고 1

### 3.6.(금)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순	법률안	주요내용
1	<b>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b>  김한표(통) 20651 안민석(민) 210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설치 및 운영·관리의 특례 및 기본 원칙 규율</li> <li>-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협의 필요사항,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 제한 및 침해 방지 원칙,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위탁 운영·관리 등</li> </ul>
2	<b>사립학교법</b>  조승래(민) 15240 오영훈(민) 14071 변재일(민) 18749 이찬열(통) 200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교 및 해산된 법인이 보관 중이던 모든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기록물관리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함</li> <li>• 교육경험 이사 자격의 범위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대학의 교원 등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이들에 준하는 자들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육경험 이사로 인정할 수 있게 함</li> <li>•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3년 및 입양휴직 6개월을 보장</li> </ul>
3	<b>한국사학진흥 재단법</b>  조승래(민) 15239 오영훈(민) 140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해산법인에 대한 청산 지원과 학교법인, 폐교 대학의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함</li> <li>• 사학진흥기금을 “해산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용도로 사용 가능</li> <li>• 청산을 위한 용자 자금은 기금 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li> </ul>
4	<b>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b>  전재수(민) 218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2014~2015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던 저금리 전환대출을 1년간 재시행하여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근거 마련</li> </ul>
5	<b>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b>  유은혜(민) 13444 조승래(민) 176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일(日)단위로 부과하도록 함</li> <li>•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라 삭제된 용어인 ‘잡종재산’을 학교용지법에서도 삭제</li> <li>• 개발지역 내 신규 학교용지 무상공급 시 기존 학교용지 무상양여하도록 하여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li> <li>•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촉진을 위해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학교용지 용도 변경 및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li> </ul>
6	<b>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b>  정부 176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li> </ul>

순	법률안	주요내용
7	<b>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b> 전희경(통) 182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li> <li>• 예측통계 등의 작성·공개를 위하여 지자체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li> </ul>
8	<b>초·중등교육법</b> 김한표(통) 2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li> </ul>
9	<b>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b> 송영길(민) 19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대학의 분교인 외국교육기관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고 산학협력단 등을 둘 수 있도록 허용</li> </ul>
10	<b>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 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b> 송영길(민) 19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 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li> </ul>
11	<b>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b> 서영교(민) 21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용 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교원 검직에 관한 특례를 법률에 직접 규정</li> </ul>
12	<b>대한민국 학술원법</b> 백승주(통) 210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학술원과 유사명칭 사용제한 및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li> </ul>

## 참고 2

##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 1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사항(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해당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책무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책무를 부여한다.
  - 구체적으로는 ①정책의 수립·시행, ②학교와 지역주민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노력, ③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 (설치) 해당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시 아래의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
  - 설치 시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①학교복합시설의 규모·용도·재원·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 ②소유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 ③학생·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④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운영·관리 원칙)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 원칙을 규정하였다.
  - ①안전하고 쾌적한 유지·관리, ②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의 제한 또는 침해 방지, ③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관리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 제정으로 인해

-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생활SOC 확충이 활발해지고 학교 교육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6199), 홍기욱 사무관(6529)

## 신·구조문대비표(제정안 조문)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며,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학교의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
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4.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않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 및 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을 통해 폐교대학과 해산한 법인이 보관 중이던 기록물은 교육부 장관의 지정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이관 받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교대학 및 해산된 법인은 보관 중이던 모든 기록물을 교육부 장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 교육부 장관은 기록물의 이관 및 관리를 위한 기록물관리전담 기관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지정할 수 있다.
- 또한, 교육경험 이사 자격의 범위를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교원, 대학의 교원 등으로 명확히 하고,
  - 이들에 준하는 자들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육경험 이사로 인정할 수 있다.
- 아울러, 「사립학교법」 제59조를 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3년, 입양휴직 6개월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육아휴직 및 입양휴직자의 신분과 처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사립 유치원의 경우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년의 유예를 두고 시행한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학생들의 학적부, 교직원의 인사기록, 학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각종 계약 서류 등 폐교 및 해산 이후에도 보존 가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것이며,
-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 역시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육아(입양)

휴직이 일정 기간 보장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사립대학정책과	과장 송선진(6912), 권진 서기관(6932), 박소하(6931)
	교원정책과	과장 강정자(6688), 정지은 사무관(6940)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21條(任員選任의 制限) ①・② (생 략)</p> <p>③ <u>理事</u>중 적어도 <u>3分の 1</u> 이상은 <u>教育經驗이 3年 이상 있는 者</u>라야 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④ ~ ⑦ (생 략)</p> <p>&lt;신 설&gt;</p>	<p>第21條(任員選任의 制限)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이사</u>-----<u>3분의 1</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당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u> <u>어야 한다.</u></p> <p>1. 「<u>유아교육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u>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u></p> <p>2. 「<u>초·중등교육법</u>」 제2조에 따른 <u>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u></p> <p>3. 「<u>고등교육법</u>」 제2조에 따른 <u>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겸임교원·명예교수·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u></p> <p>4. <u>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u></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u>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u></p>

<신 설>

<신 설>

第59條(休職의 事由) ① (생략)

② 第1項의 休職의 期間과 休職者의 身分 및 處遇등에 관하여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2.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의 인가를 받은 학교

3.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폐쇄의 명령을 받은 학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의 방법·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59條(休職의 事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는 定款(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  
에는 그가 정하는 敎員의 身分  
保障 및 懲戒에 관한 規則을 말  
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의 規定에 의한 休職  
을 이유로 人事上 불리한 處遇  
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同號의  
休職期間은 勤續期間에 算入한  
다.

<신 설>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休職할  
수 있고, 제1항제7호의2에 따른  
休職의 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  
7호의2에 따른 休職을 이유로 인  
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  
니되고, 같은 호의 休職기간은 근  
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제1  
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休  
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休職의 기  
간과 休職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  
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  
다)으로 정한다.

###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을 통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지원을 할 수 있고,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신설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해산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교대학 등의 기록물을 이관 받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동 재단은 기금을 통해 해산법인에게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때 청산을 위한 융자 자금은 기금 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게 된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해산법인이 청산 시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전문 컨설팅, 기록물 관리 등 행정적 지원 및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청산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사립대학정책과	과장 송선진(6912), 권진 서기관(693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사업) ① (생   략) 1.~3. (생   략) <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제6조(사업) ①(현행과 같음)</u> <u>1.~3. (현행과 같음)</u> <u>3의2. 「사립학교법」 제34조제2</u> <u>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u> <u>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u> <u>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u> <u>재정적 지원 사업</u> <u>3의3. 「사립학교법」 제48조의2</u> <u>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u> <u>폐지·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이</u> <u>관 및 관리 사업</u></p>
<p>제1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 용한다.</p> <p>1.~3. (생   략) <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제19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다</u> <u>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u> <u>한다.</u> <u>1.~3. (현행과 같음)</u> <u>3의2.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u> <u>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u> <u>산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u> <u>제19조의4(계정의 구분) 제19조제</u> <u>1항제3호의2에 따른 용자의 용도</u> <u>로 사용할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u> <u>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u> <u>한다.</u></p>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09년 이전 학자금대출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 정부신용보증대출을 받은 사람과 2009년 2학기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2014년~2015년도에 시행한 전환대출의 기회를 놓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1년간 재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동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저금리 전환대출 재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009년 이전 학자금대출자에게 고금리로 인한 학자금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안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김태경(6285), 박재희 사무관(6271)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3의2. “<u>전환대출</u>”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u>기대출</u>”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p> <p>&lt; 신 설 &gt;</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제2조(정의) 3의3. “<u>전환대출</u>”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u>기대출</u>”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p> <p>&lt;삭 제&gt;</p>
<p>제3조의2(<u>전환대출 대상</u>) <u>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u></p> <p>&lt; 신 설 &gt;</p>	<p>제3조의3(<u>전환대출 대상</u>) <u>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u></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 style="text-align: center;"><u>로 한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p>
<p><u>시행한다.</u></p>	<p><u>시행한다.</u></p>
<p>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2, 제3</p>	<p>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3, 제3</p>
<p><u>조의2, 제33조제5항 및 제49조의8</u></p>	<p><u>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u></p>
<p><u>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u></p>	<p><u>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u></p>
<p><u>가진다.</u></p>	
<p>제3조(현행과 같음)</p>	

**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부담 경감 및 미활용 학교용지의 효율적 활용 유도를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을 기존의 정액 부과에서 일(日) 단위로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 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개발지역 내 신규 학교용지 무상공급 시 기존 학교용지를 무상 양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 또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에 대한 용도변경 및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 촉진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담당 부서</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교육재정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과장 이강복(6199), 홍기욱 사무관(6529)</td> </tr> </table>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6199), 홍기욱 사무관(6529)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6199), 홍기욱 사무관(6529)				



지와 공유지의 분담 비율은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잡종재산인 공유지의 면적 비율로 한다.

② ~ ⑤ (생략)

제7조의2(기존학교용지의 양여)

<신 설>

제8조의2(장기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신 설>

<신 설>

-----  
-----  
-----공유지의-----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기존학교용지의 양여) 지방

자치단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할 시 제4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고립학교 또는 폐지된 공립학교의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8조의2(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않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용지 용도 해제 관련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③ 그 밖에 학교용지 용도 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호의 개정을 통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이 없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에 소모되는 시간 및 비용의 절감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김태환 사무관(6541)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p> <p>1. ~ 6. (생략)</p> <p>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p> <p>8. ~ 29. (생략)</p>	<p>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p> <p>8. ~ 29. (현행과 같음)</p>

**7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및 유아교육법(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공개하게 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측통계) 각종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 (자료 제출·연계) 예측통계 등의 작성·공개를 위하여 지자체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동 개정을 통해

- 유아 및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육통계과	과장 하유경(6325), 허영기 서기관(6630)

## 신·구조문대비표(초·중등교육법)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생략) <u>&lt;신설&gt;</u></p> <p>② <u>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③ <u>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u></p>	<p>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u></p> <p>③ <u>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와 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④ -----<u>제3항에</u>-----</p>



⑦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

⑧ (생략)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⑧ (현행과 같음)

⑨ -----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  
개 -----  
-----.

## 신·구조문대비표(유아교육법)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생략)</p> <p>② <u>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③ <u>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감은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u></p>	<p>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③ ----- 교육통계조사와 제2항에 따른 교육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p> <p>---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p> <p>-----</p> <p>·</p> <p>④ <u>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감은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u></p>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⑥ (생략)

⑦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정확성 제고 및 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② -----  
-----  
-----  
-----  
-----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p>⑧ (생략)</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교육통계조사</u> <u>의 조사대상, 절차 및 결과</u> <u>공개</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⑧ (현행 8항과 같음)</p> <p>⑨ ----- -----<u>교육통계조사와</u> <u>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u> <u>작성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u> <u>개</u> ----- -----.</p>
--	---

## 8 초·중등교육법(일부 개정)

-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통학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시·도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6199), 홍기욱 사무관(6529)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의2 <u>교육비 지원</u></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의2 <u>교육비 지원 등</u></p> <p style="text-align: center;">제60조의11(통학지원) ① <u>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② <u>제2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u></p>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일부 개정으로 외국대학의 분교인 외국교육기관도 국내에서 산학협력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교육기관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여 산학협력단 등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 만일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외국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로 편입하도록 조치하였다.
- 또한,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정관에 교직원의 직무발명권을 산학협력단에 승계하도록 하고,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이 국내에서 활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인력과 인프라를 국내 산업체·연구소와의 산학연 협력에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학연 협력 분야에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교육국제화담당관	과장 (안주란)(6771), 장영희 사무관(6769)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p> <p>가.~나. (생략)</p> <p>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u>학교</u>,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u>고등교육법</u>」 제14조에 따른 <u>교원(敎員)</u>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u>학교</u>, 「<u>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u>」 제5조 및 같은 법 제5조를 준용하는 <u>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 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u>,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u>고등교육법</u>」 제14조, 「<u>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u>」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u>교원(敎員)</u>을 말한다.</p>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④ (생략)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 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제26조(정관)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11. (생략)

< 신 설 >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 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편입한다.

제26조(정관) (현행과 같음)

1.~11. (현행과 같음)

12. 교직원의 직무발명 권리의 산학협력단 승계 및 그에 따른 수익의 외국교육기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한한다.)

10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외국교육기관법)」 일부 개정으로 외국교육기관이 산학연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교육기관이 산학연협력 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외국교육기관이 법령을 위반하는 산학연협력 활동을 하는 경우, 단호히 제재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되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교육국제화담당관	과장 (안주란)(6771), 장영희 사무관(6769)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시정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 신 설 &gt;</u></p> <p>5. (생략)</p> <p>②·③ (생략)</p>	<p>제17조(시정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 4. (생략)</p> <p>5. 「<u>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 라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 <u>산학협력 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